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상 수 원 관 리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주민 등의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입지가능한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제한적 입지 요건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구체적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제12조제1호라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유권해석으로 입지가 가능한 공익상 허가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을 보완함.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가능 부지, 설치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하도록 허용함.

다. 허가·신고행위 현황, 관리상태 평가 등 정보관리(안 제22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허가 및 신고 행위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前)임

2) 입법예고(2022. 1. 11.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철도, 도로 및 전기통신시설 등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자동차정류장(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22조제4항제9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부지 및 이와 접한 부지로 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5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을 말한다)과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각각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오염저감대책을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정보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에 다음 각 호의 정보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허가 및 신고 행위 현황, 관리 현황 등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행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 등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호
라목,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2조제1호라목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를 말한다.
나.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화장실	기존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차장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편의 등을 위한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로써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시·군·구

	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지역공공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나)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마.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및 체력단련시설의 경우에는 상수원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 산불방재시설을 말한다.
3.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개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한정한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내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나)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 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 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 령에 따른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 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 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 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 <u>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u> 2. · 3. (생략) ② (생략)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 ----- ----- ----- ----- ----- -----, ----- ----- ----- ----- ----- ----- -----.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 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 는 다음과 같다.	<u><삭 제></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 모) ----- ----- ----- -- <u>다음 각호와</u> -----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 다. (생략)
<신설>

라. (생략)
2. ~ 7. (생략)
<신설>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철도, 도로 및 전기통신시
설 등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자동차정류장(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22조제4항제9호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로 한정한다) 등의 부지 및
이와 접한 부지로 대지면적 1,
5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
며,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은 설치할 수 없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

8. (생략)

<신설>

우에는 건축연면적을 50제곱
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
하기 위한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
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물환경보전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을 말한다)과 같은 법 제21
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
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각각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오염저감대책을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
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2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정보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

	<u>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u> <u>1. 상수원보호구역 허가 및 신 고 행위 현황, 관리 현황 등</u> <u>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행 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 태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 등</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	
연 락 처	044-201-7116